

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일본군
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
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22년 12 월 20 일

여 수 시 장

2022.12.20



·여수시 조례 제1828호

붙임 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
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 1부.

여수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“일본군위안부 피해자”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(性的)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.
- “평화의 소녀상”이란 여수시 관내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.

제3조(시장의 책무) ① 여수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) 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·전시 및 조사연구사업
-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·홍보 및 학예활동

4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
 5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
 6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운영 및 홍보
 7.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·동상 등 기념물 보호지원 및 관리
 8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시장은 개인·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「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- ④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「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.
- 제5조(평화의 소녀상 보호·관리)** 시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·관리될 수 있도록 「여수시 동상 등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공공조형물로 지정하고 담당 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- 제6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